

# 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4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’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」 중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,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(안 제6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 : 덧붙임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02월 10일 ~ 03월 02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
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## 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예산담당관

## 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팀장 조남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안진섭 (790-5340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6조(보고) 채권자는 채무액·이자·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 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
# 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## ■ 지방재정법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·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